

시·도별 신고처

구분	부서명	연락처
서울특별시	자연생태과	02)2133-2148
부산광역시	환경정책과	051)888-3634
대구광역시	환경정책과	053)803-4211
인천광역시	환경기후정책과	032)440-8595
대전광역시	기후환경정책과	042)270-5442
광주광역시	기후환경정책과	062)613-4143
울산광역시	환경정책과	052)229-3144
세종특별자치시	동물위생방역과	044)300-7614
경기도	환경정책과	031)8008-3513
강원도	자연생태과	033)249-2776
충청북도	환경정책과	043)220-4033
충청남도	기후환경정책과	041)635-4415
전라북도	기후환경정책과	063)280-4533
전라남도	동부지역본부 기후생태과	061)286-7042
경상북도	환경정책과	054)880-3522
경상남도	환경정책과	055)211-6635
제주특별자치도	환경정책과	064)710-6073

2023년 12월 14일부터

**동물원·수족관이 아닌
전시시설(야생동물카페 등)에서
살아있는 야생동물
전시가 금지됩니다!**

※ 기존 전시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(27.12.13.)을 부여할 예정이므로 시·도에 현재 시설 현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2월 14일 부터
「야생생물법」개정('22.12.13. 공포)으로 야생동물카페 등
동물원·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!

전시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?

- ① 야생동물이 아닌 종
- ② 야생동물 중 타법 관리 종
- ③ 야생동물 중 「야생생물법 시행규칙」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
- ④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시 가능

전시는 언제까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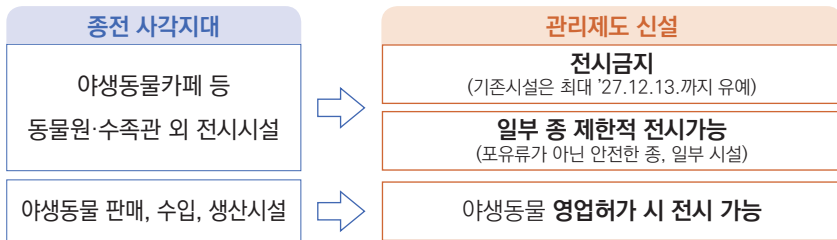
- ① 「축산법」에 따른 가축, 「동물보호법」에 따른 반려동물
- ② 「수산생물질병법」에 따른 수산생물, 「해양생태계법」에 따른 해양생물
- ③ 「야생생물법 시행규칙」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, 추후 규정 예정(~ 2023년 12월)
 - 전시 가능 종 예시 : 고정된 장소에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전시되는 앵무목, 평목, 거북목, 뱀목, 절지동물문 등(구체적 분류군은 추후 규정)
 - 전시 가능 시설 예시 : 생물자원관, 야생동물 구조센터, 야생동물 보호시설, 서식지외보전기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규정한 야생동물 관련 시설 등(구체적 시설은 추후 규정)
- ④ 판매, 수입, 생산업으로 허가받은 시설, 추후 규정 예정(~ 2025년 12월)

유예를 할 수 있나요?

기존*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(~2023년 12월 13일) 전시시설 소재지,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 할 수 있습니다.

* 「야생생물법」공포 당시('22.12.13.)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만 해당됩니다.

법 개정 전후 시설 유형별 변화



야생동물 전시자(동물원·수족관 제외)는
2023년 12월 13일(법 시행 전)까지 업체명, 소재지(주소), 대표자 이름,
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를 시·도에 신고해야 합니다!

신고 대상과 방법이 궁금합니다!

신고 대상 등록된 ①동물원·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②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*
 * 야생동물이 아닌 동물(가축, 반려동물), 살아있지 않은 야생동물(박제품), 야생동물 중 수산·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자는 제외

신고 방법 법 시행일 전까지(2023년 12월 13일 까지) 관할 시·도지사에게 서식(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[환경부 예규])을 작성하여 신고

신고 사항 전시 야생동물 종 및 개체수*, 시설 소재지, 대표자 이름
 * 수산·해양동물을 제외한 살아있는 야생동물.
 다만, 야생동물 10종 그리고 50개체 미만으로만 신고 가능하며 그 이상은 동물원 등록 대상

법 시행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 되나요?

법 시행 이후('23.12.14.) 관리 : 신규전시 금지, 신고한 기존시설 관리

신규 영업자 미신고자 법 시행(2023년 12월 14일) 이후부터 동물원·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

신고한 자 4년간(2027년 12월 13일 까지)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가 가능하나, 무분별한 먹이주기,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*, 유예기간 종료 후 전시금지

* 「동물원수족관법」제15조 및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('23.12.)

- 다만, 예외적으로 ①「야생생물법 시행규칙」으로 정한 전시가 가능한 종 및 시설에 해당하거나('23.12.까지 규정), ②야생동물 영업허가('25.12.까지 규정)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이후에도 지속 전시 가능